

수원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가합30524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명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흔

담당변호사 손현진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23. 3. 20.이 도래하면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 6. 10.이 도래하면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3. 3. 20.이 도래하면 250,000,000원, 2024. 6. 10.이 도래하면 25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 비 적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500,000,0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계기용 변압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 콘도미니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6. 11.부터 2013. 3. 19.까지 입회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5. 14. C로부터 회원자격 취득일이 2013. 3. 19.로 기재된 이 사건 제1입회계약에 따른 회원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제1입회계약

■ 목적물 표시

1. 명칭: D 골프리조트

2. 소재지: 서귀포시 E

○ 원고가 C에 지급할 총 입회금은 250,000,000원으로 한다.

○ 원고는 입회금을 완납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원고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원고는 보유기간 만료로 인한 반환청구를 C에게 할 수 있으며, 동시에 C도 보유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를 원고에게 할 수 있다.

○ 원고는 목적물 사용에 관하여 회원 상호간의 사용을 인정하고, 시설관리와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F 그룹 홈페이지의 시설이용약관에 따른다.

다. 원고는 2014년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입회계약과 같은 내용의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입회계약’이라 하고, 위 각 입회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5. 21.부터 2014. 5. 30.까지 입회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6. 9. C로부터 회원자격 취득일이 2014. 6. 9.로 기재된 이 사건 제2입회계약에 따른 회원증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2014. 5. 30.과 2014. 5. 31.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른 입회금 반환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1.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신청(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53호,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을 하여 2019. 2. 2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9. 11. 2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각 받았는데,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관리인은 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각 입회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입회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누락되었다.

바. 원고는 2020. 3. 24. 서울회생법원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입회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 추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른 입회금 반환의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회원자격 만료일이 도래하면 이 사건 각 입회금 합계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각 입회금 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에 준하는 권리의 행사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이 이 사건 각 입회금 합계 500,000,000원임을 확정해 줄 것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입회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각 채권은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누락된 채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각 입회금 반환채권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각 입회금 반환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누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C와 사주가 같은 계열사관계에 있었고 그런 연유로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 ② 원고와 같이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입회계약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인 G를 정회원과 같은 지위에서 이용하는 회원들이 상당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고객관리를 위하여 C로부터 그들의 명단을 입수하여 보관·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와 같은 지위의 회원들 중 상당수가 채권신고를 한 점, ④ 이 사건 각 입회금 반환채권은 피고가 영위하는 골프장 사업의 본질적인 영업 부분에서 발생한 채무인데다가 원고의 대표이사 H은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시기(2018. 11. 21.부터 2019. 11. 22.까지)에도 14회에 걸쳐 G에 부킹을 하여 골프장을 이용하여 왔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의 회원번호를 “I”으로 표시하고 원고가 C와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의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명기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의 개시, 채권신고기간, 인가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그런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이 사건 각 입회금 반환채권을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관리인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입회금 반환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이를 자체적인 확인 과정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골프장을 부킹하거나 골프장에 내방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홈페이지나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 등에 게시한 안내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입회금 반환채권의 신고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입회금 반환채권은 실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입회금 반환채권의 신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입회금 반환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제1입회계약에 따른 회원자격이 만료하는 2023. 3. 20.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입회금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23.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의 이 사건 제2입회계약에 따른 회원자격이 만료하는 2024. 6. 10.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입회금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2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각 입회금 반환채권이 실권되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입회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회원자격 만료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각 입회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회원자격 만료일에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장래이행의 소에는 위 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므로(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해일, 판사 신유리, 판사 이진규